



제8회 보험조사분석사(CIFI)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

제8회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**변경** 공고합니다.

2020. 3. 9

보험연수원장

【변경 사유】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위기 경보가 '심각' 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응시생의 안전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

【변경 시험일정】

구분	기존 일정	변경 일정
시험일	2020.3.21.(토)	2020.6.13.(토)

※ 3월 시험 응시원서 접수자는 전원 6월 시험으로 자동이관 되므로 재접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【시험 취소】

- 3월 시험접수자 중 6월 시험의 응시를 취소하고자 하는 응시생은 **3월 19일(목)까지 취소신청(전액환불)**
- **추가 원서접수 기간(5월12일 ~ 5월 21일)에도 취소 가능(전액환불)**

【추가 면제 신청 및 응시원서 접수 안내】

- 아래 기재된 면제신청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 추가 접수 가능
- **3월 시험의 기존 면제신청자 및 응시원서 접수자는 6월 시험으로 자동 이관**

구분	과목면제신청	응시원서접수
일정	2020. 4. 28(화) ~ 2020. 5. 7(목)	2020. 5. 12(화) ~ 2020. 5. 21(목)

【시험장소】

- 3월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자가 기존 고사장의 대관 상황에 따라 시험장소가 변동될 경우, 사전에 문자로 안내 예정



■ 시험일시 및 장소

- 시험일시 : 2020. 6. 13(토), 09:00 ~ 13:20
- 시험장소 : 서울, 부산, 대구, 대전, 광주
※ 지역별 고사장 위치는 원서접수 마감 후 수험표 출력 시 확인 가능[6.4(목) 10:00]

【참고사항】 2020년부터 연1회 시험실시

■ 과목 면제 신청 (3월 시험 과목면제 신청자는 재신청 불필요, 6월 시험으로 이관)

- 신청기간 : 2020. 4. 28(화) 10:00 ~ 5. 7(목) 18:00까지 / 10일간
※ 과목면제 신청은 매 시험마다 신청 필수(前 회차 과목면제자도 신청)

■ 응시원서 접수 (3월 시험 응시원서 접수자는 재접수 불필요, 6월 시험으로 이관)

- 응시원서 접수기간 : 2020. 5. 12(화) 10:00 ~ 5. 21(목) 18:00까지 / 10일간
- 접수방법 : 개인별 온라인 접수(www.in.or.kr /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접수)
- 응시수수료 : 50,000원(단, 부분합격자의 경우 30,000원)
※ 응시수수료 환불 : 접수기간 중 100% / 접수기간 이후~시험 전일 50% / 이후 환불 불가

■ 시험 방법

- 필기시험, 선택형(4지 선다형)

■ 시험과목

구분	교시	시험 과목	문항	배점	시간
파트 I	1교시	보험관계법령 및 약관	40	100	09:00~09:50 (50분)
	2교시	형사법 및 범죄학개론	40	100	10:20~11:10 (50분)
파트 II	3교시	보험조사론 I (이론)	40	100	11:40~13:20 (100분)
		보험조사론 II(실무)	40	100	
합 계			160	400	200분



합격자 결정방법

- **파트별 구분 채점**하며, 파트 I 과 파트 II 모두 합격하는 경우 최종 합격, 1개 파트만 합격하는 경우 부분합격 됨
- **과목별 40점 이상, 파트별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**(과목별 40점 미만시 과락)
단, 파트 I 의 과목면제자는 나머지 응시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시 파트 I 합격
- 파트별 부분합격의 유효기간은 당해 시험 후 연속되는 1회의 시험까지임
※ 예시) 제7회 시험 부분합격자의 합격 유효기간은 제8회 시험일 까지

※ 문제 이의신청기간

- 2020. 6. 13(토) ~ 6. 18(목)까지(시험일+5일 이내)
- 신청방법 : 보험연수원 홈페이지 (로그인) - 고객센터 - 1:1상담 (온라인 이의신청만 접수)

합격자 공고

- **공고일자** : 2020. 7. 2(목) 예정(보험연수원 홈페이지 www.in.or.kr 에서 개별 확인)

자격 등록

- 최종합격자는 보험연수원에 등록하여야 함(등록수수료 30,000원 별도)
※ 추후 공고하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※ 등록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고 예정

수험대비 학습 교재

- 2019년 개정판 교재 참조
※ 이전 교재 소지자 : '보험연수원 홈페이지-교재 판매-교재 정오표' 참조

응시 대상

-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외에 **제한 없음**
※ 응시 결격사유는 「보험연수원 홈페이지 - 자격시험-보험조사분석사-공지사항」 참고

기타

- 시험시작 20분전 입실 / 시험시작 후 입실 불가 / 시험시작 30분 이후 퇴실가능
- 퇴실시 문제지 및 답안지 감독자에게 제출(시험문제 및 답안 비공개)
- 단일파트(파트 I 또는 파트 II)는 부분합격에 따른 재응시자에 한해 허용

관련 문의

- 시험 담당 : 자격검정실 ☎ 02-920-0851
- 교육 담당 : M러닝운영팀 ☎ 02-920-0844
- 교재 판매 : 경영지원팀 ☎ 02-920-0815



과목면제 제도 안내

파트 1 의 과목 면제제도 안내

■ 아래 경력요건 중, 한가지 이상 충족하고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과목의 시험 면제 가능

- ① 또는 ② 중 1개 과목만 면제 가능(동일인의 복수과목 면제는 불가)

면제 대상 과목	경력 요건	제출 서류
①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감독원, 보험협회, 보험회사, 보험회사의 심사업무 관련 자회사, 손해사정법인 등에서 보험금 지급심사, 보험범죄 조사·예방 및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	- 보험금 지급심사, 손해사정 등 업무경력확인서*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	- 손해사정사시험 합격증 또는 - 등록증
②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검찰 수사 또는 경찰 수사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	-검찰수사/경찰 수사 업무경력 확인서* 또는 -검찰,경찰의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(단, 용도란에 '수사경력 확인용'으로 기재)

* 업무경력확인서 양식은 [보험연수원 홈페이지-보험조사분석사-과목면제신청(서류제출)]에서 다운
(파트II는 면제 과목 없음)

과목 면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

• 신청기간 : 2020. 4. 28(화) 10:00 ~ 5. 7(목) 18:00

• 제출방법 : 제출서류를 이미지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

- [보험연수원 홈페이지-보험조사분석사-과목면제신청(서류제출)]에서 파일 업로드

• 유의사항

- 경력기간은 2020.5.12(원서접수초일)기준 해당 업무에 종사한 각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함
- 과목면제 승인 여부는 과목면제 신청 마감일 3일 경과 후부터 보험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 가능
- 신청기간 이후 추가 접수 또는 서류보완 불가

※ 과목면제 신청은 매 시험마다 신청 (3월 시험 과목면제 신청자는 재신청 불필요, 6월 시험으로 이관)

- 前 회차의 과목면제자의 경우에도 면제 신청해야 함(단, 제출서류(경력확인서 등)는 생략 가능)
- 예) 제7회 시험에 '보험관계법령 및 약관' 면제 승인받았다고 하여, 제8회 시험에서 '동일과목'이 자동 면제 되지 않으니,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과목면제 신청을 해야 함



[자격기본법]제33조에 의거한 자격제도 관련 표시 의무사항

자격을 정보

자격명	자격의 종류	등록번호	자격발급기관
보험조사분석사(단일등급)	등록민간자격	2016-002586	(사)보험연수원

총 비용(세부내역): 총 80,000원

- 응시수수료 : 50,000원
- 등록수수료 : 30,000원
- ※ 전 파트 응시 기준 (단일파트 응시수수료 : 30,000원)
- ※ 교재구입 : 필요 시 구매가능(12,000원~62,000원(세트))

환불규정

- 응시원서 접수 중 : 100% 환불
- 응시원서접수 이후 ~ 시험전일 : 50% 환불
- 시험실시 이후 환불 하지 않음

자격관리/운영(발급기관) 정보

- 기관명 : (사)보험연수원
- 대표자 : 정희수
- 연락처 : 1588-3055
- 소재지 :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30
- 홈페이지 : www.in.or.kr

소비자 알림 사항

- 상기 "보험조사분석사"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-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"민간자격 소개"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